

한국브렌슨 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의 **고객사 상호**(이하 "매수인")에 대한 용역(이하 "용역")의 제공 및/또는 물품의 판매 및 그 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계약명**의 공급에 관한 계약조건, 청약 또는 승낙 및 기타 인용을 통하여 계약의 일부가 되는 기타 문서들은 위와 같은 매매, 실시권 허용 및/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완전한 계약(이하 "본 계약")을 구성한다. 매도인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매수인의 주문서, 승낙서 기타 본 계약 조건에 반하거나 본 계약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매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1. 가격:** 매도인이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매도인의 물품 및/또는 용역에 대하여 매도인이 지정한 가격은 매도인의 견적서와 물품 및/또는 용역에 대한 주문의 승낙서 중에서 먼저 도달한 일자로부터 30일간 효력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기간 내에 매도인의 통상적인 주문처리절차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의 즉각적인 제조, 선적 및/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승인을 수령하고 매도인이 이를 승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매도인이 위와 같은 승인을 30일 이내에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용역의 가격을 최종 생산을 위하여 발주한 당시에 적용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물품 또는 용역에 영향을 주는 변경 기타 매도인의 용역 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매도인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가격, 일정 또는 양자 모두에 대한 조정은 서면으로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반대취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하여 제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은 매수인 앞으로 선적할 때에 적용되는 매도인의 가격에 따른다.

**2. 세금:** 제품의 제조, 판매 기타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 정부기관의 부과금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가격에 추가될 수 있다. 상기 규정은 매도인의 순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지급조건:** 매도인의 청구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매도인의 신용관리 부서와 협의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내에서 매수인은 청구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 기일까지 원화로 선 지급 한다.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지급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로부터 실제로 지급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매도인이 결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매수인이 지급기가 도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른 구제수단에 부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본 계약 기타 매수인과의 체결한 다른 계약에 따른 향후의 물품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매수인은 법률비용 또는 변호사비용 등 미지급 금액의 회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제공한 서면 견적서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항이 없다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구매가격이 미화 십만 불(또는 이에 상응하는)이상이 되는 경우에 기성금에 따른 지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구서는 매도인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성지불 조건을 기준으로 발행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은 지불한다:

- 선금금: 매도인에 의한 구매계약서 수락 시 구매가격의 30%
- 기성 1: 매도인에 의한 승인 제작 도서 제출시 구매가격의 40%
- 기성 2: 매도인에 의한 선적 시 구매가격의 30%

매도인은 미화 오만 불의(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조항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 또는 대체의 기성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4. 인도 및 서류제공 :** 모든 인도일자 또는 선적일자는 개략적으로 추산한 일자이며, 매도인이 주문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을 지연하거나 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와 같은 지연 또는 이행불능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 또는 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제 9 조를 조건으로)과 손실위험은 납품 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합의된 구매 계약서나, 매도인에 의해 수락된 서면 자료에 별도의 납품시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물품은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으로 선적이 된다.(Incoterms 2010) 매도인이 전액을 지급 받는 시기까지는, 매수인은 물품

의 식별표지를 제거, 훼손, 은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나 다른 제 3자에 속하는 물품으로부터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명확하게 특정된 데이터 및 서류를 제공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추가적인 데이터/서류 또는 통상적이 아닌 데이터/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시 적용되는 매도인 지정 가격으로 제공한다

**5. 매수인의 제공 데이터:** 물품의 선택 또는 설계, 용역의 제공 및 매도인의 견적서의 준비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시방서, 정보, 작동조건에 관한 시방서, 정보 기타 진술에 의존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제 작동조건 기타 조건이 매수인이 진술하여 매도인이 신뢰한 것과 다른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보증사항 및 기타 조항들 중 그와 같은 조건에 영향을 받는 보증사항 및 조항들은 달리 상호 서면합의가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

**6. 설치:** 매수인은 모든 물품의 수령, 보관, 설치, 시운전, 유지에 책임을 진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능들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협조를 하기 위한 용역을 제안하여야 한다.

**7. 이행의 면제:** 매도인은 불가항력, 전쟁, 폭동, 화재, 노사분규, 원자재 또는 부속품의 조달불능, 폭발, 사고, 정부명령, 법, 규칙, 명령, 기타 조치의 준수 기타 매도인이 예견하지 못한 상황 또는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상황 또는 원인에 기인한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매수인에 의한 해지와 중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지나 중단에 관한 합리적인 사전 서면통지를 발송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해지나 중단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주문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9.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또는 제3자인 소유자는 해당 펌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에 관한 저작권 등 각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한다. 본 계약상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에 관하여, 해당 물품에 구현되어 있으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사용된 매수인의 공장 부지에서만 펌웨어, 소프트웨어, 그 복제본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라이선스를 허용 받는다. 특별히 그와 같은 라이선스를 허용 받지 않는 한 매수인은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프로그래밍, 개조, 변경, 복제(백업을 목적으로 한 일회적의 복제는 예외로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다른 공장부지에서 위와 같은 복제본,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별도의 라이선스계약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다. 매수인이 일정한 펌웨어(매도인이 특정하는 펌웨어) 및 모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매수인이 그 적용을 받는 데 동의하거나 매도인에 요구에 따라 체결한 매도인 또는 제3자의 해당 표준라이선스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10. 보증의 제한:** 적용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을 조건으로, 그리고 본 계약상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펌웨어가 매도인이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명령을 실행하고, 매도인이 제조하는 물품 또는 매도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관리되는 경우 소정의 보증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재료 및 제작기술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물품은 최초 설치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또는 선적일로부터 18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보증된다. 소모품(유리 부품, 전극, 막, 액체접합부, 전해질, 시약, 패킹용 고무, 플라스틱튜브 등) 및 용역은 선적일 또는 용역의 완료일로부터 90일 동안 보증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이하 "재판매 제품")은 원 제조업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증기간 동안 보증된다. 매도인은 재판매 제품의 조달 및 선적을 추천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상거래상의 주의의무만을 부담할 뿐, 재판매 제품에 대하여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를 발견하여 보증기간 중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선택에 따라 펌웨어 또는 용역에서 매도인이 발견한 하자를 즉시 교정하거나, ex works 제조지역 조건으로 매도인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물품 또는 펌웨어의 해당 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 중 하자가 있는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불충분한 관리, 통상적인

마모, 부적절한 전원공급, 환경조건, 사고, 오용, 부적당한 설치, 변경, 수리, 보관, 처리 기타 매도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모든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대체 또는 수리에 대하여는 본 조에 정한 제한적 보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서면으로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부담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분해, 재설치 및 본 보증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진단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서 합리적이고 실제로 발생하여 문서로 증명되는 비용은 매도인이 서면으로 승낙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리된 물품과 보증기간 중의 부품은 본 보증기간의 잔여기간과 90일 중 더 장기인 기간 동안 보증된다. 이와 같은 제한적 보증은 매도인이 인정하는 유일한 보증이며, 매도인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보증은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매도인의 표준라이선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매도인은 명시적인 것 또는 묵시적인 것을 불문하고, 물품 및 용역에 관하여, 상품적합성 여부, 만족스러운 품질 여부, 수용 가능한 품질 여부, 특정 목적 부합여부 기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진술 및 보증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내용이 보증위반의 경우에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11. 특허권:** 제13조에 포함된 제한을 조건으로, 매도인이 생산한 물품의 사용이 미국의 유효한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방어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판결 또는 결정된 손해액을 배상한다. 다만, 매수인이 즉시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소송의 제기사실 또는 제기가 예상되는 소송에 대하여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고, 매도인이 그러한 소송이나 화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소송에서의 방어를 위하여 매도인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조력과 협조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와 같은 소송에서 매도인이 생산한 물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그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선택과 비용으로 매수인을 위하여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주거나, 물품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거나, 물품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변경하거나, 매매가격을 환불하는 방법 등 상거래상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제공한다. 특허권 침해가 매도인이 생산한 것이 아닌 물품과 함께 해당 물품을 사용한 것에 기인하거나, 물품이 매도인이 설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물품이 매수인에 의하여 설계되거나, 매수인에 의하여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변경되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을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키는데 매수인은 동의한다.

**12. 일반조항:** (a)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b)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양해사항, 합의, 진술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c) 그 형식을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그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d) 본 계약서의 변경은 매도인의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표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에 규정되어야 한다. (e)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체결되고, 해석, 이행, 강제집행되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의 관할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데 동의한다. (f)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은 핵 또는 핵과 관련된 목적을 위한 사용에 공급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매수인은 (i) 앞 문장에 기술된 제한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인수한다. (ii) 이후의 매수인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제한을 전달하는데 동의한다. (iii) 매도인의 책임이 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의 범위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소송의 원인이 불법행위법, 계약법 기타 다른 법리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핵 또는 핵 관련 목적으로의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손실, 책임, 소송, 재판,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등으로부터 매도인을 방어, 면책하고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동의한다. (g)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1980)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h) 2001년도 싱가포르 계약법(제3자의 권리) 규정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국가의 규정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본 계약의 나머지 유효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삭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j)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물품에 대한 자격, 승인, 인가의 취득, 유지, 지급을 포함한 정부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k) 제9,12,13,15,17,18조는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이후에도 유효하다.

**13. 구제수단 및 책임의 제한:**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본 계약상 규정되어 있는 구제수단은 규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매도인은 의무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계약상 규정된 보증위반에 대한 유일한고 전속적인 구제수단은 제10조 보증책임의 제한 규정에 따른 수리, 정정, 교환, 매매가격의 환불로 제한된다. 클레임 또는 청구원인 즉, 계약, 권리침해, 과실(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제외), 엄격책임, 불법행위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매수인 또는 그 고객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클레임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것으로서 매도인인 제작한 특정 물품 또는 매도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 또는 그 고객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특별손해, 간접적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재산 및 장비의 손실 및 손상, 운영비용, 유지비용, 연료비용, 또는 전력구입비용 또는 대체전력비용 등의 비용증가에 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 것에 매수인은 동의한다. "결과적 손해"라 함은 예정된 이익, 수익 또는 사용의 손실, 이익의 손실 또는 자본비용 등을 포함한다.

**14. 매수인의 책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용역이 수행될 부지에 대하여 신속한 접근권과 적절한 작업장,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설비에 대한 접근이 매수인의 공정시스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한 있는 접근의 결과로서 데이터 손실, 생산감소 기타 결과적 손해 등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매수인은 매수인의 설비에 대한 매도인의 접근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제3자로부터의 모든 클레임, 손해, 손실, 비용(법률비용 또는 변호사비용 포함)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한 모든 안전, 보안, 위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부지에의 접근 등을 위한 조건으로서 매도인 및 그 직원에게 권리, 의무의 포기, 면책, 배상 기타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내용의 약정 등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약정은 모두 무효로 본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발주시 그 부지의 위험한 물질 및 상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해당 물질 데이터 안전용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부지 및 매도인이 제공할 용역의 성격을 숙지하고 있는 매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매도인의 직원이 부지에서 작업하는 동안 항상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도인의 현장 접근에 방해가 되는 매수인의 장비 또는 매수인의 빌딩 구조물을 제거, 교체, 개조하는 작업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직원은 매도인에게 협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 파워 스워칭을 행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파워 스워칭의 시행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파워 스워칭의 시행을 거부할 수 있다. 매도인이 파워 스워칭을 시행하는 경우 매도인의 파워 스워칭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소송, 클레임, 청구, 손해, 비용 등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 방어하고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5. 비밀정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시방서, 도면,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타 정보들은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납품업체의 자산으로 본다. 고유정보 또는 비밀정보로 표시된 정보는 영업비밀이며, 그러한 정보가 복제, 복사,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기타 제공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으며, 매도인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한 비밀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정보로서 제공되도록 한다. 본 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ii)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기 이전에 이미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iii) 매도인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제3자 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제

공방은 정보 (iv) 법령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그 제공이 요구되는 정보.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통지하고 그러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반대 또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있어 매도인에게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6. 직원의 고용:** 매수인은 매도인이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및 용역의 수행 이후 12개월의 기간 동안 매도인의 직원 또는 프로젝트팀원을 고용하거나 그러한 직원이 매도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도록 유인 또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이러한 특약은 그 대리인 및 그 계열사에게도 적용되는데 동의한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 매도인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매도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직원의 채용, 훈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고용된 직원 또는 매도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도록 유인된 해당 직원의 6월분의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7. 법령준수:** 매수인은 미국, EU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설립되어 있는 국가 또는 물품의 공급원천이 되는 국가 등의 수출입 통제 및 제재에 관한 법, 규정, 명령, 조건 및 실시권 허여, 사용승인, 포괄적 실시권 허여 또는 그에 관한 실시권 허여의 예외에 관한 조건들이 매수인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술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 명령, 조건 또는 실시권 허여, 사용승인 또는 그에 관한 실시권 허여의 예외에 관한 조건들에 위반하여 해당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사용, 이전, 공개, 수출 또는 재수출 하여서는 아니된다. 매수인은 또한 정부 또는 그 기관, 부서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 또는 정당 관계자 또는 공직 입후보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고객 또는 공급업체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부적절한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해당 관할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매도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매수인은 일체의 법적, 윤리적 기타 준칙을 준수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8.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르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관할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클레임, 분쟁 이건의 해결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매수인은 중재 절차에 따른 결과에 의거한 집행 내용에 따른다.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 중재에 따른 비용은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19. 언어:** 본 계약은 영문본과 국문본 양본으로 체결, 교부, 제시될 수 있다.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충돌, 불일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